

사업 연도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I.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 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⑤ 기말잔액	비고
				③ 감소	④ 증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본금	01					
	2. 자본잉여금	02					
	3. 자본조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익잉여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인세	22					
	9. 지방소득세	23					
	10. 계(8 + 9)	30					
	11. 차가감 계(6+7-10)	31					

II. 결손금(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 계산서

1. 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결손금					감소내역				잔액		
	발생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⑫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⑯ 기한 내	⑰ 기한 경과	⑱ 계
	⑦ 계	⑧ 일반 결손금	⑨ 배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 ⑮)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㉓ 합계 (㉓=㉕+㉖)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㉗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㉑≥㉒의 경우는 “0”, ㉑<㉒의 경우는 ㉒-㉑)
					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㉕ 이월결손금 (㉕ = ⑨) ㉑과㉒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III.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㉗ 과목 또는 사항	㉘ 코드	㉙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㉚ 수정 후 기초잔 액 (㉙+㉛-㉜)	㉛ 비고
			㉛ 증가	㉜ 감소		

작성 방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가. ② 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III.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③란의 수정 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 나. ③ 당기 중 감소란 및 ④ 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 다. ⑤ 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마.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과 “별지 제50호서식(병)”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 사. 11.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결손금(이월결손금 및 당기 결손금) 계산서

- 가. ⑧ 일반 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 상 이월결손금 발생 총액(동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순서대로 적습니다.
- 나. ⑨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⑤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 다. ⑩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 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 라. ⑫ 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 마. ⑬ 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바. ⑭ 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 사. ⑰ 기한경과란: 공제기한(2019. 12. 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20. 1. 1.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을 적습니다.
- 아. ⑱ 계란: 이월결손금 ⑪ 차감계에서 ⑮ 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 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 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차.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 카. ㉑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 타.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⑩란 음수(△) 금액을 적습니다.
- 파. ㉓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하. ㉔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㉑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거. ㉕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㉒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㉑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㉒란의 금액에서 ㉑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㉗ 과목 또는 사항란 ~ ㉙ 수정 후 기초잔액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 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 계산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합 계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②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3.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손금가산유보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5. ⑤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6.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7.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 등을 필요시 기입합니다.

작성 방법

1. 본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①은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②는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4. ③ 기초잔액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5. ④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출자의 증가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⑤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출자의 증가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출자의 증가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7. ⑥ 기말잔액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8. ⑦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 [ex.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출자의 증가)를 수령하는 경우,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9.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란의 금액과 합산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 에 적습니다.